

의안번호	2201531
의 퇴 인	서삼석의원
회 답 일	2024. 7. 9.
추 계 번호	24B1753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제4항 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	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(이하 이 조에서 “초과생산량”이라 함)을 매입하게 하여야 함</u> 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미곡을 매입할 때 미곡 가격 안정을 위하여 <u>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에는 <u>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음</u> (제4항) 1.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<u>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</u> 2.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	의무·재량 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6조제4항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(안 제16조제4항 및 같은항 제1·2호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미곡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,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현행

법 제16조제6항¹⁾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매입자금
 용자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- 개정안에 따라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
 -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
 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(안 제16조제4항제1호)
 -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
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(안 제16조제4항제2호)
- 현행 법령(시행령 및 고시) 미곡 과잉생산 등에 따른 초과생산량의 매입(이하
 “시장격리”라 함)에 관한 재량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, 개정안은 시장격리를
 의무화하면서 해당 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임

[표 1]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관한 현행 법령 및 개정안 조문 비교

	현행	개정안
「양곡관리법」	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 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 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야 한다. 다만,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 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<u>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.</u>	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 리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<u>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 량을 초과하는 생산량(이하 이 조에서 “초과생산량”이라 함)을 매입하게 하여 야 함.</u>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 어 미곡을 매입할 때 미곡 가격 안정을 위하여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 가 누적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초과생산 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음(제4항)</u> 1.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<u>초과생산량 이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</u> 이 되어 <u>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 락이 예상되는 경우</u> 2. 제1호 외의 요인으로 <u>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 년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</u>

1) 법 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.

	현행	개정안
「양곡관리법 시행령」	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)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“<u>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<u>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생산량</u>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<u>고시하는 수준 이상</u>이 되어 <u>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</u> 2. 제1호 외의 요인으로 <u>미곡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</u>	
「양곡수급안정 대책 수립·시 행 등에 관한 규정」 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	제3조(미곡의 매입 및 판매) ① 「양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매입과 관련하여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(이하 “<u>초과생산량</u>”이라 한다)의 범위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다. 가. <u>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% 이상인 경우</u> 나. <u>단경기(7~9월, 햅쌀이 나오기 직전의 시기) 또는 수확기(10~12월) 가격이 평년(최근 5년 중 최저·최고 수치를 제외한 평균) 가격보다 5% 이상 하락한 경우</u>(단 2020~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%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)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<u>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.</u>	

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·정리

□ 개정안의 미곡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곡 초과생산량, 매입 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

○ 농업협동조합등이 미곡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 위해 매입하게 하고 정부가 융자금을 융자하는 경우, 해당연도 전체 미곡 생산량 및 수요량, 시장격리용 미곡 규모, 매입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

$$\begin{aligned}\text{추가재정소요} &= \sum_t (\text{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융자금})_t \\ &= \sum_t (\text{미곡 초과생산량} \times \text{매입가격})_t + \alpha_t\end{aligned}$$

- 이때 t 는 추계기간 5년

α_t 는 행정비용, 보관료, 운송료 등 제경비

□ 그런데 쌀 생산량은 기온, 강수량, 일조시간 등 기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생산량을 예측하기 곤란하고, 연속된 쌀 공급과잉 발생 여부, 쌀 수요량과 미곡가격 등은 해당연도의 작황, 향후 소비성향 등과 연동되어 예측이 곤란하여,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※ 참고로 쌀 초과생산량, 시장격리 현황 등은 [참고자료 1] 쌀 생산량 현황 및 수확기 산지쌀값 현황, [참고자료 2] 시장격리곡 매입 현황 참고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쌀 생산량 현황 및 수확기 산지쌀값 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□ 쌀 생산량 현황

(단위: 천톤)

연도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생산량(A)	4,197	3,972	3,868	3,744	3,507	3,882	3,764	3,702
수요량(B)	3,898	3,822	3,806	3,756	3,604	3,614	3,609	3,607
초과생산량 (A-B)	299	150	62	△12	△97	268	155	95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□ 수확기(10~12월) 전국평균 산지쌀값 현황

(단위: 20kg, 정곡 기준)

연도	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산지 쌀값	단순 평균	38,303	48,392	47,491	54,121	53,535	46,817	51,810
	비추정 평균	37,328	48,215	47,084	53,456	52,198	45,455	50,699

주: 전국평균 수확기 산지쌀값은 10~12월 산지 쌀값을 평균하여 계산(통계청 조사)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참고자료 2] 시장격리곡 매입 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□ 최근 7년간(2018~2024.5월) 「양곡관리법」 제16조에 따른 시장격리곡(미곡) 매입현황

(단위 : 정곡/천톤, 억원)

연산	매입시기		평균가격 (조곡 ¹⁾ , 원/40kg)	매입물량 (정곡 ¹ , 천톤)	매입금액 (억원)	매입방법
2021	1차	'22.2.14.~4.8.	63,763(평균낙찰가)	143.5	3,176	입찰
	2차	'22.5.19.~7.20.	60,643(평균낙찰가)	125.3	2,617	입찰
	3차	'22.7.20.~9.8.	57,793(평균낙찰가)	100.7	2,027	입찰
	4차	'22.10.20.~12.31.	54,972(평균낙찰가)	78.6	1,502	입찰
	소계			448.1	9,322	
2022	'22.10.19.~'23.3.31.		64,530(1등급기준)	324	7,322	공공비축과 병행

주: 1) 조곡(粗穀)은 수확한 그대로의 알곡이며, 정곡(精穀)은 도정된 곡물(쌀, 보리쌀 등)을 지칭
(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<<https://www.nongsaro.go.kr/>>)

2) 2022년산 매입금액은 잠정치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□ 연산별 시장격리 물량 및 정산현황 등

(2024. 5. 31. 기준, 단위: 억원, 정곡)

구분	상환후 잔액 (A-B)	매입 물량 (천톤)	남은 물량 (천톤)	매입 자금 (A)	누적 상환액 (B)	상환 시기
<합 계>	28,561	2,925	772	53,759	25,200	-
■ 판매 완료('05산~'17산)	12,485	2,153	-	37,115	24,632	-
■ '05산 시장격리곡(경제지주)	-	144	-	2,433	2,433	'06~'16
■ '08산 시장격리곡(경제지주)	-	100	-	1,714	1,714	'14~'23
■ '09산 시장격리곡(경제지주)	-	566	-	9,299	9,299	'15~'24
■ '10산 시장격리곡(경제지주)	-	86	-	1,411	1,411	'11 (공매후 정산)
■ '14산 시장격리곡(경제지주)	1,918	240	-	4,715	2,798	'19~'28
■ '15산 시장격리곡(농협은행)	3,136	357	-	6,272	3,136	'20~'29
■ '16산 시장격리곡(농협은행)	2,752	299	-	4,587	1,836	'21~'30
■ '17산 시장격리곡(농협은행)	4,679	361	-	6,684	2,005	'22~'31
■ '21산 시장격리곡(농협은행, 경제지주)	8,754	448	448	9,322	568	'27~'36
■ '22산 시장격리곡(농협은행)	7,322	324	324	7,322	-	'27~'36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